

제289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2025.7.15.(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수연 의원 대표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검토경위

○ 발 의 자: 박수연 의원 외 4명

※ (공동발의자) 이수현, 이관호, 김재원, 김오현 의원

○ 발의일자: 2025. 6. 20.

○ 심사일자: 2025. 7. 15.

2. 제안이유

○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맞춤법(띄어쓰기) 수정(안 제3조 및 제6조제2항)

나.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 신설(안 제6조제3항)

다. 공무국외출장비 환수 신설(안 제12조)

라. 징계 의결 요구 신설(안 제13조)

마.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 및 계획서 현행화(안 별지)

4. 관련근거

○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5. 검토의견

○ 개정 필요성 검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에 표준안을 권고('25.1.13.)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규칙에 담고자하는 것임.

○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6조제3항**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소속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행 공무원에 대한 심사 면제는 의원의 출장 목적과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여 의원 심사 의결로 같음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안 제12조**는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관련법령²⁾에 따라 환수토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비 집행 등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명시함. 이는 출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지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1)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발표(2024. 12. 16.)

2)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출장 경비 집행의 건전성과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음.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한 출장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